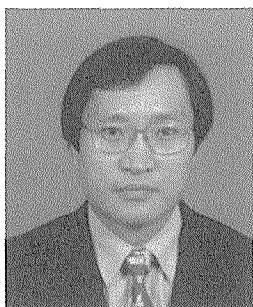


미국의 교토기후조약 불참선언



오 진 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기후변화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교토의정서와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대한 의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서한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두 가지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첫째로 교토의정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둘째로 국내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규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교토의정서에 반대하는 이유로서 부시 행정부는 철저하게 국익 위주의 경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로 교토의정서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하여, 전세계 인구의 80%에 달하는 개도국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며 효과가 없는 조약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급격한 입장선회는 미국내 민주당 및 환경단체는 물론 유럽, 개도국 등 각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미국의 에너지 업계와 산업계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세계 5%의 인구로서 세계 온실가스의 25%를 배출하고 있으며, 1인당 배출량은 인도의 20배, 중국의 8배에 달하는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발표에 환경단체들은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EU와 일본은 미국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토의정서는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5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1997년 채택되어, 현재 84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며, EU를 중심으로 각국의 비준절차가 진행중이다. 리오+10이 되는 2002년에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노력하자는 것이 그간의 국제사회의 공감대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강제규정이 아니었으며, 영국, 독일 등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반면,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 2008~2012년에 1990년 배출량수준의 평균 5%를 감축할 것을 강제규정으로서 의무화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미국에 대해 90년 대비 7%의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1999년에 이미 90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의무 기간인 2010년에는 3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10년에 7%의 감축이란 달성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국제 환경보다는 국내에너지문제로, 에너지절약보다는 에너

지공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미국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과 캘리포니아의 전력부족사태에 자극받은 바 크다. 미국내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경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 현재의 공급 여건상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의 북극국립야생생물서식지(ANWR) 까지 개발하여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에 발효되었으며,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효성은 미미할 것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원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향방은 매우 불투명하다.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불참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향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겠지만,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교토의정서의 틀 안에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작년 11월의 당사국총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쟁점들, 즉, 배출권 거래의 한도, 산림 및 토양 흡수원의 인정 등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고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이행하는 경우이다. 둘째로, 미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EU, 일본, 러시아가 찬성하면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기업이 이산화탄소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EU나 일본의 기업만이 이산화탄소 규제를 받는다면 이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한편,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준비중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교토의정서 불참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의정서 협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부시는 교토의정서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서 개도국에 감축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면 한국과 멕시코 등 신규 OECD 가입국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은 매우 강해질 것이다. 이 경우가 우리나라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선언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산화탄소 규제의무의 조기참여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건은 어떠한가?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2001~2010년간 연평균 3.7% 증가하여 2010년에 174 백만 탄소톤에 이르러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전세계 6위에 위치하게 되며, 2020년엔 4위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0년 3.4 탄소톤으로 현재의 OECD 평균(3.05TC/인)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어느 지표로 보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권 국가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어떠한 감축의무도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도국이라는 우산 아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무임승차국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대외적 협상 못지 않게 대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준비가 미약한 경우 이산화탄소 규제는 곧 과도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은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방향, 즉 에너지소비의 고효율화, 에너지 저소비형 발전전략과 일치되고 있다. 다가오는 이산화탄소 규제의 위기를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